

수원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221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22172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8. 20 선고 2020가합11171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기

담당변호사 구본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현주

변론종결 2022. 1. 13.

판결선고 2022. 2. 17.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8. 20. 선고 2020가합1117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와 2020. 1. 2. 접수 제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375,447,1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75,447,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주식회사 C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375,447,1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375,447,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만이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바꾸어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4쪽 제7, 8, 13행의 각 “피고”를 “C”로 고쳐쓴다.

- 제6쪽 제13행의 “갑 제19호증의 기재”를 “갑 제19, 21호증의 각 기재”로 바꾸어 쓴다.
 - 제6쪽 제15행, 제16행의 각 “피고에게”와 제6쪽 아래에서부터 제2행의 “피고에”를 모두 “C에”로 고쳐 쓴다.
 - 제8쪽 제2행, 제9행, 제16~17행, 제18행, 제9쪽 제1~2행, 제13행, 제15행, 제19행, 제10쪽 제1행, 제3행의 각 “N”를 모두 “C”로 고쳐 쓴다.
 - 제9쪽 제9행의 “1~2개”를 “일부”로 바꾸어 쓴다.
 - 제9쪽 제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C가 실제로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연회장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다면, 이 사건 소와 같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대비하면서 K조합으로부터의 상환요청을 해결하기 위하여 K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피고가 실제 지급할 매매대금의 액수를 높게 정하였을 것인데, C는 이 사건 연회장의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일주일 전인 2019. 12. 26. 피고로부터 103,400,000원을 별도로 차용하여 그 돈으로 K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고, 2020. 1. 2. 위 차용금 등을 공제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C가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연회장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연회장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전에 있었던 C의 금원 차용과 K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연회장에 관한 매매계약이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동기, 판사 도영오, 판사 정성화

별지